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26 선고 2022가단1018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심보문

변론 종결2023. 7. 13.

판결 선고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21. 9. 1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1. 9.

24. 접수 제306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20. 5. 21.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000,000,000원, 보증기한 2025. 5. 20., 대출일자 2020. 6. 1., 대출은행 C은행, 대출금액 1,25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20. 6. 1. C은행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변제기한 2025. 5.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21. 9.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9.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2021회합164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가 2021. 12. 16.경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2. C은행으로부터 '2021. 11. 24. 기업회생신청'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고, 2022. 2. 17. C은행에게 706,721,938원(= 원금 699,999,988원 + 이자 6,721,9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소외 회사가 맺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21. 9. 16. 체결된 점, ② 소외 회사의 2020.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자산 총계는 4,543,297,714원이고, 부채 총계는 1,947,127,594원이어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 ③ 소외 회사는 2021. 9.경 총 38개 현장에서 24,855,119,038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공사대금 채권 잔액도 14,497,718,870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회사는 2021. 11. 24.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21. 12. 8. 법원으로부터 '부채 총계가 2020년 말 기준 20억 원에서 2021년 84억 원으로 급증한 사유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2021년 경영성과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별다른 소명 없이 2021. 12. 1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한 점, 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적극재산에 대한 실사결과 2,621,439,074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720,000,000원 등 무수한 채무가 존재하며, D은행에 대한 채무 3억 원, C은행에 대한 채무 2,125,000,000원 등이 존재하여 채무초과상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소외 회사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위 회생절차 이후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추인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경희

별지